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 168

제출년월일: 2022년 8월 29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은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12조,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등의 삶의 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로.
- 나. 장애인 보조기기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며,
- 다.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에 민간위탁 재위탁하여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개요

○ 사 무 명 :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(동북,서남)

○ 위탁기간 : 2023. 1. 1. ~ 2025.12.31.

- 위탁유형 : 사무형 민간위탁
- 소요예산 : 676,681천원('22년 예산안 기준)
 - 동북(332,956천원), 서남(343,725천원)
- 수탁자 선정방식 :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(조직담당관)
 - '22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: 적정('22.5.17.)

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12조
 -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제4조
- 추진 필요성
 - 본 위탁사무는 보조기기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,
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과
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적 사업 수행 능률성을 필요로 함
 - 학문적 지식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할경우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가능하며, 지역자원을 활용한 연계가 용이하여 장애인보조기기 활용을 촉진하고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임

다. 민간위탁 사무내용

- 보조기기 상담·평가 사례관리 사업
- 보조기기 보급, 대여 사업
- 보조기기 맞춤제작, 개조, 수리 사업

- 보완대체의사소통(AAC) 서비스 사업
- 홍보 및 전시체험장 운영 사업
- 지역 연계 프로그램 및 전문성 향상 사업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

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12조.

「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

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제4조

나. 예산조치 : 2023년 예산 편성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원경희 (☎ 2133-7365)